

## 스포츠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과 성윤리 제고방안\*

Measures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ethics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sports field

설종호(Seol, Jong Ho)\*\*·정신교(Jeong, Shin Gyo)\*\*\*

### ABSTRACT

‘Gender sensitivity’ is a gender-discriminatory value structurally formed in our society and culture,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ocial and collective intellectual a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Moreover, a very positive effect can be expected in proving sexual offenses in areas where a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a leader and an athlete is formed, such as in the sports field. However,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adult susceptibility’ in proving sex crim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can guarantee general and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status of victims.

In addition, as a counter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crimes in the sports field,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atic program on sexual ethics and the creation of a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n sports facilities can be measures to prevent sex crimes in sports. This is not only required in the sports field, but is a measure that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for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improvement of vertical relationships in the sports field is also required. When a sexual offense occurs, the risk of secondary harm to the victim and systematic concealment and conciliation can pose a bigger problem.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to avoid being hit.

In the meantime, although many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an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field, these systems are still not being established in the field. In this regard, not only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maritime sector, but the entire nation should watch with interest.

Key words: sports field, Gender sensitivity, sexual ethics, sports sex offense, sports human rights

\* 이 논문은 2020년 김천대학교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주저자 : 김천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

\*\*\* 교신저자 :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I. 서론

스포츠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각급 스포츠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첫 인권실태조사 이후 매년 인권실태 및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프로스포츠협회는 인기 5대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실태를 조사하여 스포츠성폭력 문제를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정책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sup>1)</sup>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체조 국가대표 주치의가 30년 동안 체조선수 156명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폭로되었고<sup>2)</sup> 이후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개 종목 선수 197명을 상대로 조사한 성범죄에서 11%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4.3%)보다 여성(16.2%)이 피해자인 경우가 높았으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경기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로부터 존재하였던 스포츠분야의 성범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책은 반복적인 단편적 질문과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스포츠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부과하여 피해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복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포츠계의 성폭력의 현황과 스포츠 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성윤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스포츠분야 성범죄의 부패현황

### 1. 스포츠분야의 성범죄현황

#### (1) 스포츠 성범죄의 개념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적 학대,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 23쪽 이하.

2) Julie Novkov. "Law, Policy, and Sexual Abuse in the #MeToo Movement: USA Gymnastics and the Agency of Minor Athletes",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0(1), 2019, pp. 42-45.

3) Johansson, S., Kenttä, G., & Andersen, M. B., "Desires and taboos: Sexual relationships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1(4), 2016, p. 589.

중에서 성폭력이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sup>4)</sup>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행위이다.<sup>5)</sup>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선수들은 단체생활, 선수와 지도자와의 수직적 관계, 폭력에 대한 다소의 관대함이 존재하는 문화 등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성범죄와는 다른 형태의 범죄로 볼 수 있다.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스포츠분야의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합의서’(Consensus on Statem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에 의하면 스포츠계 성폭력을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성폭력’(sexual violence, sexual abuse) 대신,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희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합의서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위협요인을 정의하며,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sup>7)</sup> 이 범주에 포함되는 성폭력의 범위는 신뢰와 권력남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공간적·관계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8)</sup>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성희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성폭력특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sup>9)</sup>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성폭력을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지도자, 선수,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0)</sup>

여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약칭)

5) 정도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7쪽 이하.

6) 국제올림픽위원회,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 2007,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IOC/Who We Are/Commissions/Medical-and-Scientific-Commission/EN-IOC-Consensus-Statement-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pdf#\\_ga=2.247272068.1076736112.1595817495-594969114.1595817495](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IOC/Who%20We%20Are/Commissions/Medical-and-Scientific-Commission/EN-IOC-Consensus-Statement-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pdf#_ga=2.247272068.1076736112.1595817495-594969114.1595817495).

7) 위의 합의서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고의의 여부를 떠나 적법이든 불법이든, 성적인 언어, 비언어 혹은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회의 보고서, 2010, 50쪽 이하.

9) 문화체육관광부, “선수인권보호 혁신계획안”. 2018, 20쪽 이하.

10)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2019, 23쪽 이하.

성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sup>11)</sup> 따라서 스포츠 성범죄는 스포츠집단 내의 공간 및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력을 기반으로 성적인 모든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스포츠 성범죄의 유형

스포츠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먼저 신체적 유형이다. 이는 신체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성적 학대를 포괄하는 경우이다. 이에겐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업무와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정신적 유형이다.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수취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로 성적인 말과 행동 혹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 유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신체의 일정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는 행위, 성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 등의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셋째, 디지털을 이용한 행위이다.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메라, 인터넷 통신매체를 이용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저장, 전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2차 가해이다. 이는 앞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속한 영역에서 그 구성원에 의한 가해와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구성원에게서 받는 피해를 말한다. 이러한 2차 가해는 1차 가해와 다를 바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스포츠분야의 성범죄의 특성

스포츠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스포츠는 학원 스포츠, 직업적 스포츠,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영역은 스포츠와 관련된 지도자, 선수, 행정조직 등 다양하게 포섭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수직적 관계, 폐쇄적 분위기, 다소 높은 남성 비중 등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포츠 성범죄는 위에서 아래로, 가해자는 지도자 및 선배 선수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 및 선수가 피해자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11)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법학회, 2011, 14(1), 59쪽

### (1) 조직의 특수성

스포츠 영역은 학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라는 특수성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를 내고 이에 참여한 자들은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학원과 직장에서의 스포츠는 선수의 장래에 대해 지도자가 갖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입장은 복종적 위치에 있고 이것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포츠 영역은 조직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덮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폐쇄성은 조직의 목적과 유지를 위해 내부적 통제가 견고해진다.

조직 내의 폐쇄성과 지배성은 성범죄의 발생 전후에서 의미를 나눠 볼 수 있다. 성범죄 발생 전에는 행위자에 대한 구조적 방조를 볼 수 있고 성범죄 발생 후에는 사건의 공론화와 형사절차에서의 방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조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 (2) 가해자의 특수성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범죄에서 가해자 특징은 지도자 및 선배 선수 등이다. 다른 영역보다도 이들이 갖는 선수에 대한 위치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갈등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의 출전권, 지도권 등 선수의 장래에 관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표현하거나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조직 내의 특수성으로 인해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범죄는 다른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을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처분적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비동의간음죄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스포츠지도자가 지도라는 명목 하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는 이에 응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성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행위(예컨대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주장할 수 있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범죄의 성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 (3) 피해자의 특수성

스포츠 영역에서의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선수 및 학생일 것이다. 수직적 구조의 아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았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선수나 프로선수의 경우 합숙과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선수의 이의제기가 단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환경은 지도자에게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결속력과 예속력을 강화시킨다. 엘리트 스포츠<sup>12)</sup>의 구조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접촉과 지도는 심리적 예속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스포츠 영역에서의 지배력이 일상생활의 범위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더욱이 엘리트 스포츠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선수의 심리상태와 장래를 책임진다는 의지가 심리적 예속을 넘어 지도자와 선수의 종속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대회 출전권, 대학입시 등 미래에 대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는 스포츠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Ⅲ. 스포츠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 1. 성인지 감수성의 의의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과 관련하여 심리 시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가해자 중심적 문화,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sup>13)</sup>

12) 정책적으로 특정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훈련을 시켜 국제대회 등에서 메달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포츠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생활 체육 스포츠를 말하는 풀뿌리 체육 (Grass Root Sport)와 상업주의에 입각한 프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와 구분되는 용어다.

13) 대법원 2018.4.12. 선고2017두74702 판결.

‘성인지 감수성’은 학자들에 따라 ‘성평등의식’ ‘성인지력’, ‘젠더감수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양성 간의 성불평등 요소를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4)</sup> 또한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삶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성별의 차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이때 ‘성’은 생물학적 측면의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을 의미한다.<sup>15)16)17)</sup>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양성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 그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 2. 스포츠 성범죄와 형사처벌

EU는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성(gender)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폭력 또는 특정한 성(gender)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이라고 정의하며, 성폭력(sexual violence)을 ‘성에 기초한 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sup>18)</sup> 유럽연합 각국의 스포츠에서의 성폭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는 형벌이 필요한 성폭력을 5개로 분류하고 있다. (i) 비신체적 성추행(sexual harassment), (ii) 신체적 추행(sexual abuse), (iii) 강간(rape), (iv) 강간미수(attempted rape), (v)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iii)과 (iv)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i)과 (ii)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성년의 경우 피보호감독자간음·추행)로 처벌이 가능하다. (v)의 경우 청소년에 대해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고 동의가 있더라도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거래에 의한 성행위(transactional sex)의 처벌가능성에 대해 입증문제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간의 (i) 동의가 전제된 성적행위, (ii) 동의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행위, (iii) 편의 등 자시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더욱 보호가 필요하다.

14) 권희경·정원철,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4(3),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53쪽.

15) 권희경, “성인지 감수성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교육학회, 2018, 95쪽.

16) 이성기,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112쪽.

17) 조현욱·홍완식·김승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14(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74쪽.

18) ‘스포츠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전략적 실행 방안 제안’(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Strategic Actions on Gender Equality in Sport), EU 집행위원회

### 3.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으로는 지도자의 성폭력범죄(예컨대 피감독자 간음·추행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에 대해 사법적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예컨대 스포츠 지도자의 경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수에 대한 지배력이 절대적인 경우 스포츠지도자의 성적 요구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제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또는 동의 유무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는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 요구되며 이는 보편적으로 경험법칙의 근거가 필요하다.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평균적 기준마련도 요구된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적어도 성(gender)별 평균적 행위 태양 및 심리상태에 대한 특징이라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 IV. 스포츠분야의 성윤리 강화방안

### 1.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스포츠분야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의 발생과 현상에 대한 인지도류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sup>19)</sup>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에서 성희롱에 대한 허용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지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도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는 매년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등에 대해 선택적 권고사항이라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IOC는 ‘스포츠 성폭력 해결을 위한 합의서(Consensus Statement Sexual Harassment & Abuse in Sport)’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을 의

19) 김인형,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 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0, 55쪽.

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분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포츠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sup>20)</sup> 우선적으로 스포츠분야의 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스포츠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스포츠분야는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와 차별, 평등에 대한 기본개념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의 침해사례를 예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양성평등의 침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분야의 양성평등에 대한 강령과 지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계가 남성 중심의 사고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

## 2. 범죄예방 인증(CPTED) 도입

스포츠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합숙소, 훈련장소에서 발생한다.<sup>21)</sup>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장소가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시설에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스포츠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범죄예방환경(CPTED\_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위한 범죄예방 인증제도의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범죄예방환경(CPTED)은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체육시설 등에도 도입하게 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예방환경(CPTED)은 잠재적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피해자, 장소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리학적 설계를 말한다.<sup>22)</sup> 따라서 건물, 도로, 조명, CCTV 설치, 시건 장치의 개선, 출입문 개선, 기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응집력,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sup>23)</sup>

범죄는 일반적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이론으로 ‘일상 활동이론’이 있다. 이는 범죄발생에 있어서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당한

20) 김미숙·전상완·이제현, “스포츠 성폭력의 종합적 고찰을 통한 정책 제언: 인지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3), 한국체육정책학회, 2020, 154쪽.

21) 대한체육회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0, 23쪽.

22) 이상원, “경비협회부설 Security Academy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5, 2005, 5쪽.

23) 이상원, 위의 논문 7쪽.

범죄대상자(suitable target), 보호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 등으로 구분된다.<sup>24)</sup> 이와 같은 요소가 결합된다면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이 중 한 가지라도 결합이 있다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보호의 부재는 범죄자에게 범죄를 유발하게 하거나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감시, 혼자 있는 사람과 같은 상황은 동기화된 범죄자에게 매우 직접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범죄예방환경(CPTED)은 범죄환경에 대한 억제에 중점을 둔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조사에서 국가대표 선수촌의 출입 관리와 건물의 사각지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성범죄자는 동기적 범죄 욕구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최적화된 범죄환경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스포츠 성범죄에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은밀하고 친숙한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곳이 가해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환경(CPTED)이라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두어 전국의 학교·각종 시설·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설계인증을 하고 있다.<sup>26)</sup>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특정 공간에 대해 경찰의 범죄 예방진단을 통해 기준을 통과하면 2년 간 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스포츠 영역에도 적용하여 안심스포츠 시설인증을 도입하여 스포츠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구조적 투명성 제고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빈도는 매우 낮다. 이는 코치와 선수, 선·후배 선수 간의 수직적 관계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범죄를 덮을 것을 종용하는 조직의 분위기나 가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성범죄 발생 후 절차적 단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조직의 회유 내지는 은폐, 가해자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비단 조직적 은폐와 회유는 스포츠 분야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 깊게 내재된 개인보다는 단체, 승리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희생 등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을 조직과 단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

24)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On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Brenner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2), 1979, p. 251.

25) 감사원, "2019.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실태 조사" 2020, 34쪽.

26) 경찰청, "CPTED 방법인증제 추진결과", 2014, 19쪽.

에 이러한 성범죄가 사회구성원에게 노출되고 사회구성원의 2차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스포츠 성범죄의 경우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인지되었을 경우 사건관계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직이 폐쇄적일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조직의 문화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사건을 대하는 스포츠 분야의 기본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의 은폐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4. 행정규제 강화

스포츠 분야의 성범죄에 대해 형벌이 개입되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은 없다. 특히 스포츠는 참여하는 자의 유대관계와 신뢰는 다른 조직과는 또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행정적 개입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도자와 운동선수의 관계, 운동선수 간의 선후배 관계 등은 지도자의 경우 선수의 출전권, 상급학교에의 진학 등 많은 부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문제를 덮으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포츠지도자의 경우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sup>27)</sup>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비위 정도에 따라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2020년 8월 5일 시행).<sup>28)</sup> 그러나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박탈은 행정제재이나 실질적으로 형벌 의존적이라는 한계

27)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법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격하고 신중한 단계를 거쳐 형사처벌을 설정하고 있다. 행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비난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형법적 판단에 의존할 필요성은 적다 형사 판결과 독립적으로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스포츠 영역 내의 자정적 기능을 유도함과 동시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이며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스포츠분야에서와 같이 지도자와 선수 간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영역에서는 성범죄 입증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이 성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효과성은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성 있는 피해자의 평균적 특성과 심리적 상태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범죄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성윤리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의 시행과 스포츠시설에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스포츠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수직적 관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과 조직적 은폐와 회유 등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조직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스포츠 영역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권고와 개선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스포츠 영역에 종사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참고문헌

- 감사원, “2019.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실태 조사”, 감사원, 2020.
- 경찰청, “CPTED 방법인증제 추진결과”, 경찰청, 2014.
- 곽연희·정원철,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제44권 제3호,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회의 보고서, 2010.
- 국제올림픽위원회,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 2007.
- 권희경, “성인지 감수성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교육학회, 2018.
- 김인형,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 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0.
- 김미숙·전상완·이재현, “스포츠 성폭력의 종합적 고찰을 통한 정책 제안: 인지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20.
- 대한체육회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2010.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2019.
- 문화체육관광부, “선수인권보호 혁신계획안”. 2018.
- 문화체육관광부·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1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11.
- 이상원, “경비협회부설 Security Academy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5, 한국민간경비학회, 2005.
- 이성기,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 조현욱·홍완식·김승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제14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정도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12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On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Brenner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2), Published By: Springer, 1979.
- Julie Novkov, “Law, Policy, and Sexual Abuse in the #MeToo Movement: USA Gymnastics and the Agency of Minor Athletes”,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0(1), 2019.
- Johansson, S., Kenttä, G., & Andersen, M. B, “Desires and taboos: Sexual relationships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1(4), 2016.

투고일자 : 2021. 12. 10

수정일자 : 2021. 12. 17

게재일자 : 2021. 12. 31

<국문초록>

## 스포츠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과 성윤리 제고방안

설중호 · 정신교

스포츠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스포츠 성폭력  
에 대해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각급 스포츠 팀의 구성원을 대상  
으로 첫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인권실태 및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프로스포츠협회는 인기 5대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에 대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성폭력문제를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정책적 대안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이며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스포츠 분야  
에서와 같이 지도자와 선수간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영역에서는 성범죄 입증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효과성은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성 있는 피해자의 평균적 특성과 심리적 상태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범죄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성윤리에 대한 체계적 프로  
그램의 시행과 스포츠시설에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스포츠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수직적 관계의 개선도 요구된  
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의 위험과 조직적 은폐와 회유 등은 더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피  
해자가 조직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스포츠 영역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권고와 개선이 있었음에도 아직  
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양 영역에  
종사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포츠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성윤리, 스포츠 분야, 스포츠 인권